

## 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**

※ 7월 8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“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2010.07.12 미래정책연구실

### □ 개요

< 개 요 >

- '12년까지 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, 일자리 5,000여개 창출
  - ① (정책금융시스템) '12년까지 최대 5,000억원 수준의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,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·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 마련 등
  - ② (농식품산업특구개발) 농식품산업에 특화된 '산업특구제도' 개발
  - ③ (R&D 투자 강화) '12년까지 400개 과제에 1,000억원 지원 목표
    - 기초원천, 산업화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신속한 특허·인증 획득 지원
  - ④ (창업촉진·규제완화)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파일럿플랜트('12년까지 12개소) 확충, 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('12년까지 17개소) 설치, 공장설립 간소화, 소규모 제조·가공업체 환경규제 완화 등
  - ⑤ (시장확대 지원) 테스트코너 및 특별판매장 설치, 해외 수출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

### □ 주요 내용

#### 1.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정책금융 지원규모 확대

-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'12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「농식품 모태펀드」를 조성함.
  -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.
  - 창업투자회사(조합)는 등록 후 3년 내에 납입자본금·펀드조성액의

40%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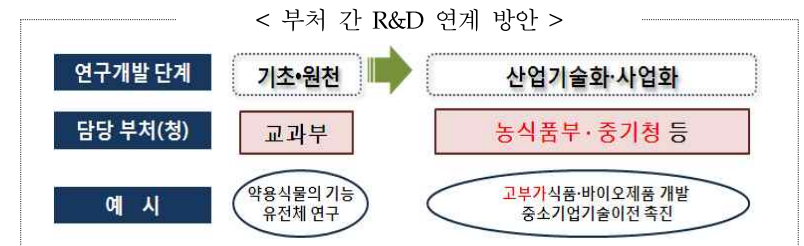
-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」, 「기술신용보증」 지원 시 융합기업에 대한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임.
  -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'식품종합자금'으로 통합하여 농식품 제조·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함.
  - 중기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, 시설설치,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'농·공·상 융합자금'을 지원함.

#### 2. 농식품 산업특구 개발

-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·유통·물류·연구 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 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.
- 특구에는 인프라조성, 자금지원, 조세특례,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지원 할 계획임.

#### 3. R&D 자금과 특허출원, 기술거래, 컨설팅 통합지원

-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'12년까지 1,000억 원 지원 목표로 400개의 R&D과제를 추진할 계획임.
  - 이와 함께 기초·원천기술, 산업화 기술이 중견 농어업인,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이전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.



-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(녹색기술은 1개월)로 단축함.

-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.

#### 4. 창업지원제도 약속 및 식품관련 규제 완화

- 농어업인의 제조·가공 창업지원을 확대하고, 기업참여를 유도
  -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「파일럿플랜트」 설치 확대
  - 파일럿플랜트 설치 : ('10년) 4개소 → ('11년) 8 → ('12년) 12
-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 위해 산·학·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**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**할 계획임.
  - 사업단 신규 육성 : ('11년) 10개소 → ('13년) 10 → ('15년~) 26
- 대학·연구소에 **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**를 설치·지원 ('12년까지 17개소)하고,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융합기술 산업화, 창업보육 등을 지원할 계획
- 융합기업은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 증설 또는 이전 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·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여 간소화할 예정
  - 창업계획 승인대상 : (현행) 창업 7년 이내 → (개선) 융합기업은 창업 7년 이후도 포함
  - 아울러, 농어업인과 농식품 전공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임.
- 정부는 **관련규제도 대폭 완화**한다는 방침도 정함.
  -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**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(현행 10%)를 폐지**
  -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㎡이하로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
    - 가공업체는 **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**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함.
   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(환경부)

- 또한, **건강기능식품은 식품,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을 허용**
  - 전면 위탁생산(Toll Manufacturing) :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에 모든 공정의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제도
-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등 외식업체를 포함하여 한식세계화를 선도할 외식기업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.

#### 5. 융합형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·시장개척 활동 지원

- 전국 2,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(나들가게) 등에 **융합 신제품 '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' 설치**하고, 농식품부·중기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,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임.
  - (농식품부)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, Korea Food Expo 등, (중기청) 대한민국 창업대전 등
  - 정부·학교·군대 등 공공기관에 융합 기업 생산식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- 한편, 융합형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 시 **대기업의 해외 유통망**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협력을 유도함.
- **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(9개),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(99개)·공동 물류센터(14개국 26개) 등 해외 인프라를 공동 활용**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
#### 6. 융합형 기업의 육성 지원단 구성 및 5개 법령 제·개정 추진

- 농식품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**“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”**을 구성하여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임.
- 5개 관련 법령도 금년 중 제·개정을 추진하여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.

## 주간농업·농촌동향 유기가공인증식품 인증제도 국제기준 적용

※ 7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된 「국제기준인 ISO Guide 65 기준 적용을 위한 식품산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### □ 주요 내용

○ 식품산업육성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은 인증기관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폐지되고 국제기준인 ISO Guide 65(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 사항)가 적용되는 것임.

- 현 제도는 인증기관에 상근 인증심사원을 3명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원 자격도 학력과 경력의 요구수준이 너무 높아서 **과도한 규제**라는 지적이 있었음.

- ISO Guide 65는 인증심사원, 품질관리, 기록 유지 등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미국·유럽연합·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기준임.

· ISO Guide 65는 ISO 적합성평가위원회(CASCO)에서 제정, '98년 발행된 "ISO/IEC Guide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"을 번역하여 '02년에 작성하고, '07년에 확인한 한국산업규격임.

· 유가식품의 경우 미국, EU, 일본,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, 일반제품인증에서 민간기관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.

○ 또한,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지침을 없애고,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함.

○ 한편, 유기가공식품의 제조·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의 **허용물질 목록**도 국내 식품관련 법률과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적용함.

- 천연착향료, 미생물 및 효소제제,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등 11개 물질이 신규로 허용됨.

- 기구·설비와 관련된 세척·소독제는 '식품위생법'에 근거하여 폭넓게 허용함.

- 개암껍질, 나무수지, 나뭇재, 아르곤, 운모, 켈프 등 20개 물질은 허용물질에서 제외되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이 금지됨.

### □ 식품산업진흥법 아위법령 개정안

#### 1. 시행령 개정안

○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(제31조제1항제2호)

- 인증심사원 3명 이상 보유토록 하던 것을 '적합하게 훈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분한 인원'을 갖추도록 조정함.

- 추상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운영업무규정(6종류)을 '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(KS A ISO Guide 65)'의 기준(23종류)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으로 구체화함.

○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폐지(현행 제32조 삭제)

- 인증심사원 자격을 시행령 제31조에서 ISO Guide 65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폐지

#### 2. 시행규칙 개정안

○ 국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사용이 허용 되는 물질과 식품첨가물공전 등제품목 등을 참조하고,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허용물질 목록을 조정

- 식품첨가물공전에 미등재된 물질(나무수지, 나뭇재 등)과 천연재료 특성의 식품 성분 물질(식물성기름, 쌀가루 등)은 삭제

- 천연 착향료, 미생물 및 효소제제 등 생산업체 추가 요구 및 국제기준에서의 허용물질 반영

- 영양강화제, 카제인나트륨, 젖산칼슘 등 수출생산업체요구 반영
- 정부에서 인증수수료 Guide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규정에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토록 함.